

의안 번호	2505	【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(안)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10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2.(금)

2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참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연도말 기금조성액: 1,917,334천원 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 ㉠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
2,074,474	72,010	229,150	△157,140	1,917,334

나. 수입계획: 72,010천원 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수입액	수입내역
합계	72,010	
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	59,100	기금 적립금 및 운용통장 이자수입
(216-02) 융자금회수이자수입	3,310	사업단 융자금 이자 수입
(224-07) 그외수입	2,300	내일키움 통장 반환금 등
(713-01) 민간융자금회수수입	7,300	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

다. 지출계획: 229,150천 원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지출액	지출내역
합계	229,150	
(201-02) 공공운영비	150	등기송달료 등
(301-02) 사회보장적수혜금	7,200	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
(307-11) 사회복지사업보조	71,800	맞춤형 직무교육, 우수참여자 할랑캠프 사업 등 추진
(402-03) 민간위탁사업비	50,000	자활기업 및 사업단 활성화 지원
(501-01) 융자금 대여	100,000	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 및 제1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참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,
- 세부내용을 검토한 바,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.68%로 전년도 본예산(7.6%) 대비 3%정도 증가했으나 2023회계연도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 평균 비율인 23.2%의 46%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성 비율을 보이므로,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다. 지출계획 : 100,200천 원

(단위: 천원)